

【제 1342 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2017년 1월 20일 (금)

고양시보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7-12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2017-129호

고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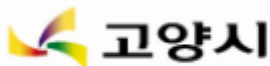
5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7-16호

도로명주소 고시

17



| 발행 : 고 양 시 | 편집 : 공보담당관 |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 |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고양시 건축 조례」(2017. 1. 13. 공포·시행)가 시행규칙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규칙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7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주교동)

○ 전 화 : 건축과 건축팀 (031-8075-312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건축과
입안자	과장 성명	건축과장 최병길
	팀장 성명	건축팀장 전찬주
	담당자 성명·전화	이석규 (031-8075-3126)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감경 규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경규칙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조, 제2조)
- 나.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기 형식을 변경하는 등 감경기준을 알기 쉽게 정비함.(안 별표)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거없이 수집되는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안 별지 제4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아동청소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31-8075-2288)
- 팩 스 : 031-8075-491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경대상 및 기준)” 을 “(감경대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아동청소년과
입안자	과장 성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팀장 성명	청소년팀장 이수용
	담당자 성명·전화	유창희 (031-8075-2288)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	· 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판매액 1만원 미만	· 판매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	· 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	· 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50% 감경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아. 만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영 제40조 제2항 규정의 위반행위로 하며, 그 위반 행위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생 략)</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p> <p>.....</p> <p>.....</p> <p>.....</p> <p>제2조(감경대상 등)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 표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정기준	[별표]	과징금 감정대상 및 감정비율	
<p>감정대상 위반행위</p> <p>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p> <p>2.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p> <p>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p> <p>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p>	<p>감정 기준</p> <p>○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 감정</p> <p>○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30% 감정</p> <p>○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20% 감정</p> <p>○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50% 감정</p> <p>○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30% 감정</p> <p>○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 20% 감정</p> <p>○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p> <p>○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경우 50% 감정</p> <p>○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0% 감정</p> <p>○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20% 감정</p>	<p>감정대상 위반행위</p> <p>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p> <p>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p> <p>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p> <p>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p>	<p>감정비율</p> <p>50%</p> <p>30%</p> <p>20%</p>	<p>·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p> <p>·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p> <p>·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0개 이상 ~50개 미만</p> <p>·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10개 이상 ~30개 미만</p> <p>·판매액 1만원 미만</p> <p>·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p> <p>·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p> <p>·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정기준	[별표]	과징금 감정대상 및 감정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감정대상 위반행위</p> <p>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p> <p>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p> <p>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감 정 기 준</p> <p>○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5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30%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0%감경</p> <p>○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3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20%감경</p> <p><input type="checkbox"/> 주류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p> <p><input type="checkbox"/> 담배판매자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p>	<p style="text-align: center;">감정대상 위반행위</p> <p>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p> <p>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p> <p>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감정비율</th> </tr> <tr> <th style="width: 50%;">50%</th> <th style="width: 50%;">3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body> </table> <p>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고용기간</th> <th style="width: 33%;">·고용기간</th> <th style="width: 33%;">·고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 이상 ~3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 이상 ~3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월 이상 ~3개월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 이상 ~1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 이상 ~10명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 이상 ~1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 이상 ~10명 미만</td> </tr> </tbody> </table> <p>·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p>	감정비율		50%	30%	20%	20%	·고용기간	·고용기간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감정비율																					
50%	30%																				
20%	20%																				
·고용기간	·고용기간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감 경 기 준	50%	30%
8. 법 제30조제7호를 한 경우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20%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목인한 때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차 종류를 차 종류를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감정대상 위반행위</th> <th>감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1. 공통사항</td> <td></td> </tr> <tr> <td>○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td> <td>50% 감경</td> </tr> <tr> <td>○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td> <td>50% 감경</td> </tr> <tr> <td>○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를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td> <td>50% 감경</td> </tr> <tr> <td>○ 65세이상 고령인 경우</td> <td>30% 감경</td> </tr> <tr> <td>○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모·부자가정 포함)</td> <td>50% 감경</td> </tr> <tr> <td>○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td> <td>30% 감경</td> </tr> </tbody> </table>	감정대상 위반행위	감정기준	11. 공통사항		○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 감경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를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50% 감경	○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모·부자가정 포함)	50% 감경	○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30% 감경	<p>[별표]</p> <p>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감경대상 위반행위</th> <th colspan="2">감경비율</th> </tr> <tr> <th>50%</th> <th>30%</th> <th>20%</th> </tr> </thead> <tbody> <tr> <td>11.</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td> <td></td> <td></td> <td>50% 감경</td> </tr> <tr> <td>·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td> <td></td> <td></td> <td>50% 감경</td> </tr> <tr> <td>·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td> <td></td> <td></td> <td>30% 감경</td> </tr> <tr> <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td> <td></td> <td></td> <td>30% 감경</td> </tr> <tr> <td>· 만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td> <td></td> <td></td> <td>30% 감경</td> </tr> </tbody> </table>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11.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 만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
감정대상 위반행위	감정기준																																																														
11. 공통사항																																																															
○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 감경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를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50% 감경																																																														
○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모·부자가정 포함)	50% 감경																																																														
○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30% 감경																																																														
감경대상 위반행위	감경비율																																																														
	50%	30%	20%																																																												
11.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50% 감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0% 감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30% 감경																																																												
· 만 65세 이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30% 감경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41-8 외 3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 20.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 일	부 여 사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59-50, 359-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41-8 (대자동)	20170120	20090710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바라는 뜻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70-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76 (화전동)	20170120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288-1 (덕은동)	20170120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0-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70 (관산동)	20170120	20090911	옛군정이 위치한 곳으로 관아를 지칭하는 말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3-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67 (동산동)	20170120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2002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1-8, 76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76 (내유동)	20170120	20100126	유산길 시점에서 50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54번길 33 (성사동)	20170120	20100126	흥도로 시점에서 454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4-40, 284-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06 (내유동)	20170120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108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4-49, 284-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10-8 (내유동)	20170120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1080m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4-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04 (내유동)	20170120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1080m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4-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08 (내유동)	20170120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108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9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22-18 (삼송동)	20170120	20120601	옛 지명인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9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22-22 (삼송동)	20170120	20120601	옛 지명인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6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3길 8-1 (삼송동)	20170120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3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인길 6 (원흥동)	20170120	20131022	삼송동과 원흥동의 한자씩을 도로명에 활용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3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62 (풍동)	20170120	20080218	숲속마을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86-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발로 25 (성석동)	20170120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8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5-30 (풍동)	20170120	20100126	애니골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5-32 (풍동)	20170120	20100126	애니골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5-36 (풍동)	20170120	20100126	애니골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64, 1127-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5-38 (풍동)	20170120	20100126	애니골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실문동 719-6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26-56 (실문동)	20170120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 치한 도로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실문동 761-75, 761-6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145-35 (실문동)	20170120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 치한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4-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75번길 183-7 (문봉동)	20170120	20100126	공릉천로 시점에서 1750m에 위 치한 도로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3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컵로 102-83 (장항동)	20170120	20110715	세계속의 고양의 한류월드를 감 싸안고 있는 의미의 도로명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7-1, 138-1, 1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신로 360 (대화동)	20170120	20090911	대 화-정발산의 면적에서 한 자 씩을 활용하여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109-7, 1109-2, 1109-10, 1109-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76번길 6 (덕이동)	20170120	20100126	덕이로 시점에서 2760m에 위 치한 도로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범곡동 750-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47-53 (범곡동)	20170120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 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61-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61-14, 1065-2, 1065-3, 1065-4	경기도 고양 시 일산동구 고봉로770 번길 228	2017. 1. 20	증축으로 인한 지번추가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별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일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54번길 33		2017. 1. 2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성사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15-34		2017. 1. 2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풍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276번길 6		2017. 1. 2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덕이동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75번길 183-7		2017. 1. 2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12. 23	문봉동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신로 360		2017. 1. 20.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10. 28	대화동	